

KEB하나은행 K리그2 2018 대회요강

제37조 (경기장 안전과 질서유지)

1. 홈 클럽은 경기개시 2시간 전부터 경기종료 후 모든 관중 및 관계자가 퇴장할 때까지 선수, 팀 스태프, 심판을 비롯한 전 관계자와 관중의 안전 및 질서유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.
2. 홈 클럽은 상기 1항의 의무 실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, 경기장 안전 및 질서를 어지럽히는 관중에 대해 그 입장을 제한하고 강제 퇴장시키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3. 연맹, 클럽, 선수, 코칭스태프 및 팀 스태프, 관계자를 비방하는 사안이나, 경기진행 및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 관련 클럽은 즉각 이를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.
4. 경기감독관은 상기 3항에 해당하는 사안을 경기 중 또는 경기전후에 발견하였을 경우, 관련 클럽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, 관련 클럽은 경기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
5. 상기, 3,4항의 사안이 시정 조치되지 않을 경우, 상별규정 유형별 징계기준 제5조 마,항 및 바,항에 의거, 해당 클럽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.
6. 관중의 소요, 난동으로 인해 경기 진행에 문제가 발생하거나, 선수, 심판, 코칭스태프 및 팀 스태프, 미디어를 비롯한 관중의 안전과 경기장 질서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클럽이 사유를 불문하고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.

제38조 (홈경기 관리책임자, 홈경기 안전책임자 선정 및 경기장 안전요강)

모든 클럽은 경기장 안전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해 홈경기 관리책임자 및 홈경기 안전책임자를 선정하여 연맹에 보고하여야 하며, 아래의 경기장 안전요강을 숙지하여 실행하고 관중에게 사전 공지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.

1. 반입금지물

경기장에 입장하려는 사람 또는 입장한 사람은 홈경기 관리책임자 및 홈경기 안전책임자가 특별히 필요사항에 의해 허락했을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각 호에 명시된 것을 가지고 입장할 수 없다.

- 1) 경기장 관리자에 의해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
- 2) 정치적, 사상적, 종교적인 주의 또는 주장 또는 관념을 표시하거나 또는 연상시키고 혹은 대회의 운영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게시판, 간판, 현수막, 플랜카드, 문서, 도면, 인쇄물 등
- 3) 연맹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특정의 회사 또는 영리기업의 광고를 목적으로 하여 특정의 회사명, 제품명 등을 표시한 것 (특정 회사, 제품 등을 연상시키는 것 포함)
- 4) 그 외 경기운영 또는 진행을 방해하여 타인에게 불편을 주거나 또는 위협하게 하거나 혹은 그러한 우려가 있거나 또는 운영담당·보안담당, 경비종사원이 위협성을 인정하는 것

2. 금지행위

경기장에 입장하려는 사람 또는 입장한 사람은 홈경기 관리책임자 및 홈경기 안전책임자가 특별히 필요사항에 의해 허락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각 호에 명시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
- 1) 경기장 관리자에 의해 금지되고 있는 행위
- 2) 정당한 입장권 또는 통행증을 소지하지 않고 입장하는 것
- 3) 항의 집회, 데모 등 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
- 4) 알코올, 약물 그 외 물질을 소유 및 복용한 상태로 경기장에 입장하는 행위 또는 경기장에 이러한 물질을 방치해 두어 이것들의 영향에 의해 경기운영 또는 타인의 행위 등을 저해하는 행위 (알코올 등의 영향에 의해 정상적인 행위를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상태일 경우 입장 불가)
- 5) 해당 경기장(시설) 및 관련 장소에서 권유, 연설, 집회, 포교 등의 행위
- 6) 정해진 장소 외에서 차량을 운전하거나 주차하는 것
- 7) 상행위, 기부금 모집, 광고물의 게시 등의 행위
- 8) 정해진 장소 외에 쓰레기 및 오물을 폐기하는 것
- 9) 연맹의 승인 없이 영리목적으로 경기장면, 식전행사, 관객 등을 사진 또는 비디오로 촬영하는 것
- 10) 연맹의 승인 없이 대회의 음성, 영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 및 미디어를 통해 전달하는 것
- 11) 경기운영 또는 진행을 방해하여 타인에게 폐를 끼치거나 또는 위협을 미치거나 혹은 그러한 우려가 있으면서 경비종사원이 위협성을 인정한 행위

3. 경기장 관련

- 1) 입장권, 신분증, 통행증 등의 제시가 요구되었을 때는 이것을 제시해야 함
- 2) 안전 확보를 위해 수하물, 소지품 등의 검사가 요구되었을 때는 이것에 따라야 함
- 3) 사건·사고가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, 경비 종사원 또는 치안 당국의 지시, 안내, 유도 등에 따라 행동할 것

4. 입장거부 또는 퇴장명령

- 1) 홈경기 관리책임자 및 안전책임자는 상기 3-1호, 2호, 3호의 경기장 안전요강을 위반한 사람의 입장을 거부하여 경기장으로부터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, 상기 3항에 의거하여 반입금지물 몰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2) 홈경기 관리책임자 및 홈경기 안전책임자는 상기 4-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히 고의, 상습으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이후 개최되는 연맹 주최의 공식 경기에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.
- 3) 홈경기 관리책임자 및 홈경기 안전책임자에 의해 입장이 거부되거나 경기장에서 퇴장을 받았던 사람은 입장권 구입 대금의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.

5. 권한의 위임

홈경기 관리책임자는 특정 시설에 대해 그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6. 안전 가이드라인 준수

모든 클럽은 연맹이 정한 「K리그 안전가이드라인」을 준수하여야 한다.